

##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별표 2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
  -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773천원에서 17%를 인상한 월 2,074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별표 2로 표기함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영동군조례 제 호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기준년도	지 급 액
2023년도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074,000원으로 한다.
2024년도	2024년도 월정수당은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2025년도	2025년도 월정수당은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2026년도	2026년도 월정수당은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 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